

光州直轄市西區零細民生活安定資金融資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 書

1994年 7月

社 會 產 業 委 員 會

1. 審査經過

가. 提出日字 : 1994年 6月 9日

나. 提出者 : 西區廳長

다. 回附日字 : 1994年 6月 10日

라. 上程日字 { 1994年 7月 4日 第33回 光州直轄市 西區議會(臨時會)
1994年 7月 4日 3次 社會產業委員會

2. 提案說明의 要旨

〈提案說明者 : 社會課長 李龍玉〉

가. 提出理由

'94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융자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음

나. 主要骨子

○ 기금의 설치 (제2조)

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

○ 회계관계공무원 (제13조)

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, 분임기금운용관은 사회과장,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함

○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(제14조)

경리관, 징수관, 총괄채권관리관, 총괄채무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경리관, 분임징수관, 채권관리관, 채무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수입금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.

○ 결산등 (제15조) 지침

기금결산보고서는 매회계년도 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하고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다. 法的根據

○ '94년도 예산편성지침

○ 지방재정법

○ 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의 要旨

○ 본개정 조례안은 '9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0조4항 및 동시행령 3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 제출되었고

○ 이 조례안은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운용을 매회계년도 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다음 회기개시 9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하여 적절한 기금을 관리토록 하였으며

○ 그러나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으로 사전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집행 후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 결산검사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규칙 제정시에 영세민 편의위주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.

4. 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要旨 : 없음

6. 修正案의 要旨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년 7월 4일 의회사회산업위원장

나. 수정이유

- 제1조와 제2조의 "영세서민"을 "영세민"으로 하는 것은 대상자를 영세민으로 한정시키기 위함
- 제9조4항의 "할수있다"는 "해야 한다"로 수정은 영세민이 자금을 융자 받아서 반드시 당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7. 審査結果 : 修正案可決

8. 少數意見의 要旨 : 없음